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이해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 내용

---

개요	ii
서문	iii
정중하고 신속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	1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1
기밀성에 대한 권리	2
정보 및 지원에 대한 권리	2
발언할 권리	5
세금 감사 중의 권리	6
징세 과정 중의 권리	9
위험 판정 청문회에 대한 권리	14
환급 청구에 대한 권리	14
납세자 권리 조언 사무소	15
납세자의 권리 관련 법규(세입 및 세무법 절)	16
탄원서, 환불 청구 및 벌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의 우편 주소	18
기타 세무 기관의 지원 받기	20

참고: 본 간행물의 서술은 일반적이며 표지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입 및 세무법 부문과 영업세 및 수수료에 적용되는 규정은 복잡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과 본 간행물이 상충하는 경우, 모든 결정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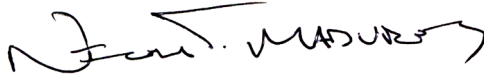
## 개요

---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에서 우리의 사명은 필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세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세하여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의견이 있는 경우, 납세자 권리 조언 (TRA)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소는 납세자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부서의 다른 부서와 독립적이며 납세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고 특정 시기에 압도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세스를 탐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RA 사무소 전체 직원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분이 규정 준수에 이르는 가장 간단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리소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 절차를 탐색하고 이용 가능한 기회를 알 수 있도록 귀하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스, 감독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  
2019년 10월

# 서문

## 세입 및 세무법에 대한 참조

본 간행물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해 세입 및 세무법(R&TC)의 특정 절이 적용되는 경우, 참고를 위해 절 번호를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R&TC의 7084절은 납세자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해당 절에 대한 참조는 R&TC 7084절로 표시됩니다. 이 간행물은 판매 및 사용 세법에 대한 인용을 제공하지만, 특별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법률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CDTFA가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납세자 권리 법령의 요약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정중하고 신속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

우리는 모든 납세자가 정중하고 전문적인 대우를 받고 팀원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납세자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약속하며 납세자와의 연락 및 커뮤니케이션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R&TC 7088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납세자 권리 조언 \(TRA\)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CDTF와 상호 작용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법이 일관성 있게 집행될 권리,
-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 사용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
- 세금 프로그램 관리와 무관한 조사나 감시 활동에서 자유로울 권리. (R&TC 7092절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이 조항을 위반한 모든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DTF는 세법을 관리하고 필수 지역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세입을 징세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CDTF와 상호 작용하는 동안 괴롭힘, 부적절한 행동 및/또는 귀하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CDTF의 직원이 CDTF가 발표한 절차를 무시해서 불리한 결과를 겪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최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TC 7099절].

CDTF의 행동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조상, 성별, 성적 취향, 종교, 연령, 장애 또는 정치적 소속 또는 의견에 관계없이 수행된다는 것이 CDTF의 정책입니다.

또한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CDTF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액세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공개 액세스 정책 및 공개 액세스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기밀성에 대한 권리

기밀 유지권은 CDTFA가 귀하의 개인 및 금융 식별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 허가증에 표시되는 정보는 공개 정보이며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 우리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CDTFA가 기밀 유지 규칙에 구속되는 다른 정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법으로 승인됩니다.

## 정보 및 지원에 대한 권리

귀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순하고 비기술적인 언어로 정보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납세자의 가장 일반적인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 및 감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R&TC 7085 절]. 이 정보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과 함께 납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R&TC 7084 절].

또한 청각 장애인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인터넷

웹사이트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 등급

세금 및 신고서 적용 방법에 대한 기본 수업은 현장 사무소의 직원이 제공합니다.

교육 행사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행사에 등록하시려면, 웹사이트로 가서 [납세자 행사 및 교육](#)을 클릭하십시오. [온라인 지도\[교육\]](#)을 통해 판매 및 사용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 중소기업 박람회 및 세미나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료 원데이 세무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사업 소유자에게 사업 및 세금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주 전체에서 제공됩니다. 현지 [CDTFA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우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음 세미나의 날짜,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중소기업 박람회 또는 세미나에서 검토된 것과 유사한 비디오 및 프레젠테이션을 당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

세금 보고서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 지원은 1-800-400-7115(CRS: 711)로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행물

온라인에서 간행물과 양식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은 CDTFA 세금 및 수수료 법률의 전체 텍스트에서 계약업체 및 인테리어 장식이 등 특정 산업을 위해 설계된 간행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분기별 세금 정보 게시판(TIB)에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한 게시글, 신규 및 개정 간행물에 대한 공지사항 및 기타 관심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http://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에서 최신 및 보관된 TI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B 최신호가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CDTFA 업데이트 이메일 목록에 가입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간행물 목록 또는 간행물을 얻으려면 웹사이트 ([www.cdtfa.ca.gov/formspubs/pubs.htm](http://www.cdtfa.ca.gov/formspubs/pubs.htm))를 방문하십시오.

## 서면 조언

특정 유형의 거래에 세금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 서면 조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 감사에서 귀하에게 제공된 사업 거래에 대한 의견은 샘플 또는 실제 검토에서 현안이 조사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사전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면 조언"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활동 또는 거래와 관련된 사실 및 조건은 이전 감사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사실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CDTFA의 서면 조언" 으로 간주됩니다 ([규정 1705](#), [채무 면제 참조](#)).

나중에 의존하는 서면 자문이 오류로 밝혀진 경우, 잘못된 자문에 직접 관련된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한 세금 부채 지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R&TC 6596절](#)]. 문서화된 자료만 잘못된 조언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조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CDTFA 웹사이트 하단에서 [문의하기](#)를 클릭한 다음 [이메일에서 일반 세금 질문](#)을 클릭하여 세금 관련 서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CDTFA 사무실](#)에 직접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면 조언 요청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및 허가 번호(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활동 또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의 완전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정 기록 사본

정보 관행법에 따라 개인은 세금 기록과 같은 금융 정보를 포함하여 CDTFA 파일에 저장된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와 피납자는 CDTFA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CDTFA의 신고, 결제 및 서신과 같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한 요청은 가장 가까운 현장 사무소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8A, [기록 검사 및 정정 방법\(www.cdtfa.ca.gov/formspubs/pub58a.pdf\)](#)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록에 대한 공개 액세스

공공 기록법은 CDTFA가 유지하는 비 기밀 납세자 계정 정보에 대해 기록이 법적으로 공개가 면제되지 않는 한 제한된 공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밀 세금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공기록물법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공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공시 사무소에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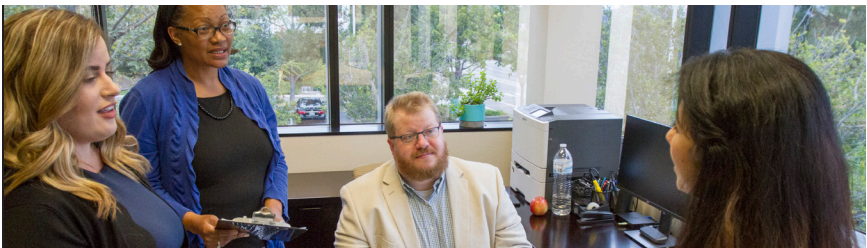
공시 사무소, MIC:82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2  
전화번호: 1-916-445-2918  
이메일 주소: [Disclosure.Office@cdtfa.ca.gov](mailto:Disclosure.Office@cdtfa.ca.gov)

## 발언할 권리

CDTFA의 납세자 권리 조언은 매년 공개 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에서 납세자는 CDTFA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법률에 대한 아이디어, 우려 사항 및 권장 사항을 표현하도록 초대됩니다 [R&TC 7085절]. 변호인은 귀하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CDTFA를 통해 납세자가 세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납세조언자와 조언자의 팀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의 날짜 및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RA 사무실 (15 페이지 참조)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우려 사항, 제안 사항이 있거나 CDTFA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권리 조언 사무소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사 중의 권리

귀하의 사업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귀하는 공정한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인은 수익 할당량 또는 목표에 근거하여 평가되지 않습니다 [R&TC 7087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는 감사 프로세스와 요청된 모든 정보에 대한 이유에 대한 명확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6, 감사를 참조하십시오](#). 웹사이트에서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지난 3년간 제출된 신고서를 다룹니다. 신고서가 없는 경우, 법은 8년 동안 감사를 허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감사인은 귀하가 *제한 권리 포기*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권리 포기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출소 기한의 연장을 제공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이 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권리 포기 조항은 귀하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며, 그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크레딧은 체납 세금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항소 절차에서 언제든지 귀하를 지원할 회계사,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데려올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인은 감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귀하를 만날 것입니다. 귀하는 모든 조정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작업 서류, 일정, 설명 등을 포함하여 감사에 대한 전체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TC 7086절].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의 감독관 및 필요한 경우 감사 감독관의 상급자를 만나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회의 이후 CDTFA 직원은 현지 수준에서 모든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 통지** 또는 **환불 통지**라는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결정 통지(고지)에 명시된 채무에 동의하는 경우 즉시 전액 지불하거나 현지 [CDTFA 사무실](#)의 징세 직원에게 연락하여 지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는 미지급 세금 부채에 대해 계산되며 세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계속 누적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채무를 지불하지 않으면 10%의 최종 벌금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기한까지 전체 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CDTFA는 귀하가 할부 결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합의한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10%의 최종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R&TC 6832절](#)]. [12페이지](#), 할부 결제 계약 참조.

감사 결과 환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부 통지를 받게 됩니다. CDTFA는 환부 수표 발행을 위해 해당 정보를 주 감사국에 전달합니다. 경우에 따라 CDTFA 또는 다른 주정부 기관에 지불해야 할 채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감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결정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할 시한을 넘긴 경우, 법령에서 채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또는 수수료를 전액 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DTFA의 재량에 따라 귀하에게 전송된 결정 통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늦은 항소를 "행정적 항의"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규정 35019](#)]. ([간행물 17](#), [항소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와 특별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DTFA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CDTFA-416](#), [재결정을 위한 청원서](#)라고 불리는 공식 이의 신청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십시오.
-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금액(납세자가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결정 통지를 재검토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또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위임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18페이지](#)의 청원 감사 및 기타 결정 목록의 해당 주소로 청원서를 보냅니다. 항소하는 동안 모든 CDTFA 연락에 적시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식 이의 제기 절차에는 BTFD(사업세 및 수수료 부서)의 감사 검토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옵션을 평가하여 이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귀하에 대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귀하의 사례는 감사인에게 다시 회부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거나, CDTFA가 즉각적인 조정 사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중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한 채무의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TC 7093.5절](#)].

합의를 추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합의 부문, MIC:87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7  
전화번호: 1-916-324-2836

귀하가 BTFD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 컨퍼런스를 요청한 경우 (그리고 요청을 받았으며 그 요청을 확인한 경우), 귀하의 사건은 항소국에 회부되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소국 변호사 또는 감사인이 항소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됩니다. 귀하는 편리하게 [CDTFA 사무실](#)에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가 녹음될 경우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녹음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대부분은 1년 이내에 결정되지만, 일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항소로 인해 이자 발생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부채의 세금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지 않은 금액은 이의 제기가 마무리되면 환불됩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무료 전화 1-800-400-7115(CRS: 711)로 연락하여 이의 제기 상태와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항소국이 귀하의 항소 전체를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소장을 [세금 항소 사무국\(OT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OTA가 이의 제기를 거부하거나 OTA에 이의 제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채무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CDTFA는 감사 및 항소 절차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두 개의 간행물을 제공합니다([간행물 17](#), [항소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와 특별세 및 간행물 76](#), 감사). 두 간행물 모두 CDTF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비용에 대해 상환받을 권리

OTA가 귀하의 항소 전체를 또는 일부를 승인하는 경우, CDTFA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한 경우, 귀하는 청문회와 관련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여부 또는 청구 방법 등 변제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T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금은 다음 주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 항소 사무소  
PO Box 989880  
West Sacramento, CA 95798-9880

## 징세 과정 중의 권리

모든 징세 조치 중에 귀하는 CDTFA 팀원으로부터 정중하고 전문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수수료가 제때 지불되지 않는 경우 CDTFA는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징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귀하의 재산에 대해 선취권을 제기하거나 임금,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징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징세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웹사이트에서 사본을 다운로드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려는 모든 시도에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CDTFA는 징세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는 기록의 마지막 주소로 보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CDTFA에 주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CDTFA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CDTFA에 적시에 알리지 않으면, 사업체의 소유 또는 운영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 법인에 의해 발생한 세금, 수수료, 추가 요금, 이자 및/또는 벌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체의 판매자의 판매 및 사용 세금 채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CDTFA에 납세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구매 가격의 금액까지 해당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4](#), [계정 폐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법인 임원 또는 법인 판매세 및 사용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경우, 법인이 해지, 해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미납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취권(사전 통지, 무료 배포, 기록 수수료)

세금 선취권은 귀하의 재산 및 재산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공적 채무 통지입니다. 세금 선취권이 제출되면 공공 기록의 문제가 되며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전액 지불되면 CDTFA는 선취권 면책허가를 발급하고 카운티 기록원에 기록합니다.

선취권 제출 30일 전에 CDTFA에 의해 통지받아야만 채무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R&TC 7097절](#)]. 해당 통지는 최종 채납 세금에 대해 발송된 즉시 [지급 요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 판정(즉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 청구서)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취권이 오류로 제기된 경우, 귀하는 "무료" 면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무료 배포를 사용하면 선취권을 삭제할 수 있으며 선취권이 오류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취권이 제출된 카운티의 주요 신용 보고 회사에 사본을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CDTFA는 면책 또는 종속이 채납 세금 징세를 용이하게 하거나 국가와 납세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취권을 면제하거나 종속시킬 수 있습니다 [[R&TC 7097절](#)].

## 압류 및 채권 압류 통고

압류 및 채권 압류 통고는 부채를 충족하기 위해 재산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CDTFA는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예: 은행 계좌, 임금, 부동산 및 외상매출금)을 압류/



채권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CDTFA는 압류 예상 비용과 해당 부동산의 매각 비용이 부과금이 부과된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한 모든 압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조원자는 또한 압류 또는 통지가 납세자, 그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압류 또는 통지의 해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R&TC 7094절](#)].

다음 경우 CDTFA는 압류된 재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 납세자가 할부 결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한). 또는
- 자산의 반환은 채납 세금 징세를 용이하게 하거나 국가와 납세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됩니다 [[R&TC 7094.1절](#)].

임금 차압은 순임금의 25퍼센트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현지 [CDTFA 사무실](#)의 직원에게 청문회를 요청하여 압류가 과도한지, 순 급여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압류를 줄여야 한다는 귀하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가 실수로 압류된 경우, 귀하의 법무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은행 수수료 및 기타 합당한 제삼자 수표 청구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R&TC 7096절](#)]. 압류 후 90일 이내에 CDTFA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CDTFA는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CDTFA의 문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잘못된 압류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허가 또는 면허 취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CDTFA는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및 사용 세법 [[R&TC 7098절](#)]과 특정 특별 세금 및 수수료 법률에 따라, 귀하의 이 조치가 취해지기 60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16페이지 및 17페이지 표 참조]. 계정 관련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로 계속 운영하면 금전적 벌금 및 형사 고발 [[R&TC 6071](#) 및 [7153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할부 결제 계약

CDTFAs는 미납된 세금, 이자 및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귀하와 서면 지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결권을 가집니다. 상호 동의하에, 귀하와 CDTFA는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R&TC 6832 (a)절].



세금이나 수수료를 신고할 때 CDTFA로부터 청구서를 받을 때 전액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금을 전액 납부할 현금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팀원들은 귀하와 협력하여 귀하가 지불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지불 계획에 동의하기 전에 재무 제표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을 권장합니다. CDTFA는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합니다.

**참고:** 할부 결제 계약이 수락되면 세금 선취권이 중단될 수도 있고 중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선취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납세자가 할부 결제 계약에서 고지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해당 계약을 준수하고 최종 확정 후 36개월 이내에 채무를 만족시키는 한 약정이 합의된 후에는 선취권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CDTFA의 정책입니다. 계정을 취급하는 CDTFA 사무실에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벌금

귀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CDTFA는 특정 벌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은 위증죄 벌금에 따라 귀하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TC 6592절].

CDTFA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포털(<https://onlineservices.cdtfa.ca.gov/Directory/>)에서 벌금 구제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19페이지**의 벌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 목록의 해당 주소로 요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CDTFA는 할부 결제 계약을 요청하고 만족스럽게 완료한 납세자에 대한 CDTFA 채무에 대한 최종 벌금을 완화합니다. 최종 벌금은 청구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부분에 대한 10% 벌금입니다. 구제 요건을 갖추려면, 채무에 가짜 벌금이 부과될 수 없으며, 납세자는 할부 결제 계약을 개시하거나 요청해야 하며, 결정 또는 재결정의 통지가 확정된 후 45일 이내에



계약을 수락해야 합니다 [R&TC 6832절]. 지불 계획은 합의된 대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불 계획의 완료 후, 최종 벌금 구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5](#), [이자와 벌금](#)을 참조하십시오.)

## 이자

이자는 미납 세금으로만 계산되며 세금이 원래 납부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이자는 부채의 세금 부분이 납부될 때까지 계속 누적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이자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이자가 면제될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를 경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 CDTFA의 잘못된 서면 조언에 의존했거나 [R&TC 6596절], 2) 화재, 홍수 또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납부가 지연된 경우 [R&TC 6593절].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CDTFA 직원의 불합리한 오류 또는 지연으로 인해, 또는
- 자동차 또는 선박에 대한 사용세를 계산하는 데 오류가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가 차량관리부인 경우 [R&TC 6593.5절].

CDTFA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환불을 제공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CDTFA가 상환 결정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상환에 대한 이자가 면제됩니다 [R&TC 섹션 6964].

[19페이지](#)의 벌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 목록의 해당 주소로 이자 구제 요청을 보냅니다.

## 타협적 제의

타협적 제의(OIC)는 CDTFA에 납부해야 할 채무 세금 또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제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OIC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폐쇄된 계정에 대해 세금 또는 수수료 채무를 지는 경우;
- 채무가 발생하는 사업과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 경우;
-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합리적인 시간 내에  
미지급한 금액 전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CDTFA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OIC를 고려합니다. 1) 세금 징세 변제를 받지 않은 개설 및 활동 중인 사업체, 2) 전임자로부터 채납 세금을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의 승계자, 3) 판매자 허가를 보유할 필요가 없지만 채납 사용 세금이 발생한 소비자. 일반적으로 OIC 부서 직원은 제안서가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5~7년)에 CDTFA가 귀하로부터 징세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대표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의 제안에 대한 승인을 권장합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산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 제안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6](#), *타협적 제의*를 참조하십시오.

## 위험 판정 청문회에 대한 권리

귀하는 세금의 즉각적인 지불을 위한 청구서인 위험 판정에 관한 행정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간행물 17](#), *항소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와 특별세 및 수수료를 참조합니다.*

행정 청문회 동안 위험 판정이 채무가 없거나 결정이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 및/또는 징세 체류를 요청하는 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위험 판정이 재산 압류를 수반하는 경우, 귀하는 CDTFA의 항소국 대표 전에 행정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CDTFA가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이 귀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입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환급 청구에 대한 권리

귀하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지불을 하는 경우, 귀하는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식 [CDTFA-101](#), *환급 또는 크레딧* 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양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법률은 모든 청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적시에 청구의 근거를 진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CDTFA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포털](#)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는 [18페이지](#)의 환급 요청 목록의 해당 주소로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적시에 청구하려면 과도 지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과도 지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과도 지불의 경우, 청구는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또는 초과 지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둘 중 더 늦은 날짜) [[R&TC 6902절](#)]. CDTFA가 압류, 선취권 또는 기타 집행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징세하는 세금, 벌금 또는 이자의 과도 지불에 대한 환급을 초과 지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TC 6902.3절](#)].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종 결정 통지(청구서)에서 할부 결제를 한 후 채납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청구서에 적용된 향후 모든 결제 및 출소 기한이 남아 있는 이전 결제에 대한 환불 청구를 한 번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청구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각 청구에 대해 적시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 납세자 권리 조언 사무소

일상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우려 사항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또는 CDTFA가 관리 또는 감독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경우 TRA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납세자 권리 조언 사무소, MIC:70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전화번호: 1-916-324-2798  
무료 전화: 1-888-324-2798 팩스: 1-916-323-3319  
이메일: [www.cdtfa.ca.gov/email](http://www.cdtfa.ca.gov/email)

CDTFA 웹사이트의 [TRA 사무소](#)를 방문하여(*나의 권리* 알기 클릭) 다음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TRA 사무실에 연락하기](#);
- 다가오는 [납세자 권리 장전 회의](#)에 대해 읽기; 및
- [납세자 권리 조언자의 연차 보고서](#)를 읽거나 다운로드.

# 납세자의 권리 관련 법규

## (세입 및 세입과세법 부문)

설명	판매세 및 사용세 7080-7099	자동차 연료 면허세 8260-8277	사용 연료세 9260-9278	담배세 30458-30459.7	주류 음료 세금 32460-32476	에너지 자원 추가 요금 40200-40216	긴급 전화 사용자 추가 요금 41160-41176
관리	7082	8260	9260	30458	32460	40200	41160
납세자 권리 조연자	7083	8261	9261	30458.1	32461	40201	41161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	7084	8262	9262	30458.2	32462	40202	41162
작성하기	N/A	N/A	N/A	N/A	N/A	N/A	N/A
납세자 미준수 분야	7085	N/A	N/A	N/A	N/A	N/A	N/A
연례 청문회	7085	8263	9263	30458.3	32463	40203	41163
단순/명확한 언어로 된 진술	7086	8264	9264	30458.4	32464	40204	41164
팔당량/목표 제한	7087	8265	9265	30458.5	32465	40205	41165
직원의 공개 접촉 평가	7088	8266	9266	30458.6	32466	40206	41166
청원 및 환급의 시의적절한 해결	7089	8267	9267	30458.7	32467	40207	41167
청문 절차/위치	7090	8268	9268	30458.8	32468	40208	41168
청문회 비용 변제	7091	8269	9269	30458.9	32469	40209	41169
비과세 조사 제한	7092	8270	9270	30459	32470	40210	41170
분쟁 재무 합의	7093.5	N/A	9271	30459.1	32471	40211	41171
타협적 제의	7093.6	N/A	9278	30459.15	32471.5	40211.5	41171.5
압류 해제	7094	8272	9272	30459.2	32472	40212	41172
압류 재산 반환	7094.1	N/A	9272.1	30459.2a	32472.1	40212.5	41172.5
압류 면제	7095	8273	9273	30459.3	32473	40213	41173
은행 수수료 면제	7096	N/A	9274	30459.4	32474	40214	41174
선취권 제출 전 고지 사항	7097	N/A	9275	30459.4	32475	40215	41175
일시 중지 전 고지 사항	7098	8276	9276	30459.6	N/A	N/A	N/A
절차를 무시한 직원에 대한 구제책	7099	8277	9277	30459.7	32476	40216	41176

# 납세자의 권리 관련 법규

## (세입 및 세입과세법 부문 계속)

설명	유해 물질 세금 43511-43527	통합 폐기물 관리 수수료 45856-45872	기름 유출 대응, 예방 및 관리 수수료 46611-46628	지하 저장 탱크 유지 보수 비용 50156-50156.18	수수료 징세 절차 55321-55337	디젤 사용 연료세 60621-60637	목재 산출세 68505-38880
관리	43511	45856	46611	50156	55321	60621	38701
납세자 권리 조연자	43512	45857	46612	50156.1	55322	60622	N/A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	43513	45858	46613	50156.2	55323	60623	N/A
작성하기	N/A	N/A	N/A	N/A	N/A	N/A	N/A
납세자 미준수 분야	N/A	N/A	N/A	N/A	N/A	N/A	N/A
연례 청문회	43514	45859	46614	50156.3	55324	60624	N/A
단순/명확한 언어로 된 진술	43515	45860	46615	50156.4	55325	60625	N/A
팔당량/목표 제한	43516	45861	46616	50156.5	55326	60626	N/A
직원의 공개 접촉 평가	43517	45862	46617	50156.6	55327	60627	N/A
청원 및 환급의 시의적절한 해결	43518	45863	46618	50156.7	55328	60628	38614
청문 절차/위치	43519	45864	46619	50156.8	55329	60629	N/A
청문회 비용 변제	43520	45865	46620	50156.9	55330	60630	38708
비과세 조사 제한	43521	45866	46621	50156.10	55331	60631	N/A
분쟁 채무 합의	43522	45867	46622	50156.11	55332	60636	N/A
타협적 제의	43522.5	45867.5	46628	50156.18	55332.5	60637	38880
압류 해제	43523	45868	46623	50156.12	55333	60632	N/A
압류 재산 반환	43523.5	45868.5	46623.5	50156.17	55333.5	60632.1	38505
압류 면제	43524	45869	46624	50156.13	55334	60633	N/A
은행 수수료 변제	43525	45870	46625	50156.14	55335	60633.1	N/A
선취권 제출 전 고지 사항	43526	45871	46626	50156.15	55336	60633.2	N/A
일시 중지 전 고지 사항	N/A	N/A	N/A	N/A	N/A	60634	N/A
절차를 무시한 직원에 대한 구제책	43527	45872	46627	50156.16	55337	60635	N/A

## 탄원서, 환불 청구 및 벌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의 우편 주소

CDTFA 팀원이 신청서, 청구서 또는 구제 요청을 보내도록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에 나열된 사무실 중 한 곳으로 양식을 보낼 수 있습니다. <https://onlineservices.cdtfa.ca.gov/Directory/>에서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전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	주소
<b>감사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청원</b>	
판매세 및 사용세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사용세 제외)	청원 부문, MIC:38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8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사용세	소비자 사용 세금 부문, MIC:37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기타 모든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이의 신청 및 자료 분석 부서, MIC:33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b>환급 청구</b>	
판매세 및 사용세	감사 결정 및 환급 부문, MIC:39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9
기타 모든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이의 신청 및 자료 분석 부서, MIC:33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	주소
목재 산출세	목재 세금 부문, MIC:60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0
<b>벌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b>	
판매세 및 사용세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사용세 제외)	청원 부문, MIC:38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8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사용세	소비자 사용 세금 부문, MIC:37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기타 모든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이의 신청 및 자료 분석 부서, MIC:33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 기타 세무 기관의 지원 받기

CDTF가 관리하지 않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기관의 납세조연자 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 개발부 (EDD)

1-888-745-3886

캘리포니아 주세무국 (FTB)

1-800-852-5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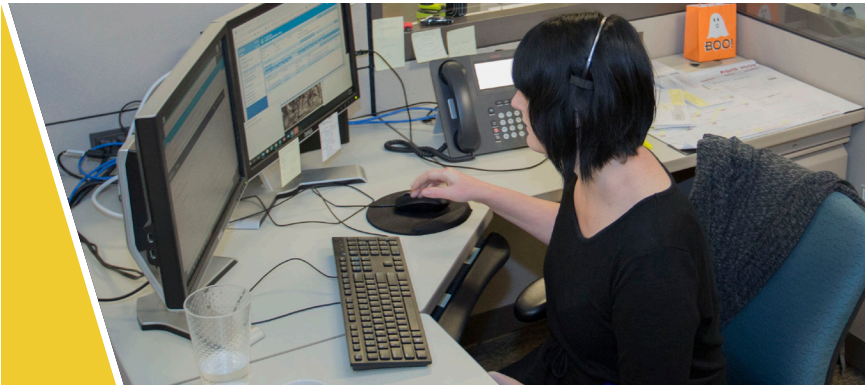
조세형평국 (BOE)

1-916-327-2217

연방 국세청 (IRS)

1-877-777-4778

전체 연락처 정보는 CDTFA [간행물 145](#),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조연자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캘리포니아 납세자 조연\(문의하기- 나의 권리\)](#)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링크를 보려면 [캘리포니아 세금 서비스 센터\(www.taxes.ca.gov\)](#)를 방문합니다.







## 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